

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

1. 일반현황

- 업소명:
○ 소재지:
○ 대표자:

2.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

오염 물질명	배출농도 (mg/L)	할 당 오염부하량 (kg/일)	지 정 배출량 (L/일)	일일유량 (L/일)	지역별 부과 계수	배출 기간 (일)	오염총량초과과 징금부과에 따른 위반횟수

○시료 채취일: ○개선 완료일: (개선기간 중 휴무일: 일)

가. 오염물질 1kg당 연도별 부과단가 ----- 원(A)

나. 초과오염배출량(일일초과오염배출량 × 배출기간)----- kg(B)

일일초과오염배출량 ----- kg

※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: (일일유량 × 배출농도 × 10^{-6} - 할당 오염부하량) 값과 [(일일유량 - 지정배출량) × 배출농도 × 10^{-6}] 값 중 큰 값

(뒤 쪽)

다. 초과율별 부과계수 ----- (C)

라. 지역별 부과계수 ----- (D)

마.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----- (E)

바. 감 액 ----- (F)

사. 오염총량초과과징금 = (A)×(B)×(C)×(D)×(E)-(F)----- 원

가산금: 오염총량초과과징금×5/100----- 원

납기 후 부과금: 오염총량초과과징금+가산금 ----- 원

※비고: 바목의 “감액”이란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 중 같은 법 제9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작성일: 년 월 일

작성자: 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